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2020. 12.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0-181
----------	--------

2020. 12. 8.  
전문위원 신준호

## 1. 제출경위

- 가. 제 안 자 : 마포구청장(건강증진과)
- 나. 제 안 일 : 2020. 11. 13.
- 다. 회 부 일 : 2020. 11. 13.

## 2. 제출이유

관내 하천 이용객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하천 일대 보행자길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관내 하천(불광천·홍제천·향동천)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 6조제1항제6호)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민건강증진법」
- 2)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기타

- 1) 입법예고 : 2020. 10. 15.~ 11. 4.(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3) 규제개혁심의위원회 : 원안 의결

## 5. 검토의견

### 가. 조례 개정 배경

-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공공장소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나.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6조제1항제6호 신설 조항은 “하천일대의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구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정한 것으로서, 「하천법」<sup>1)</sup>에서 정의하고 있는 하천의 범위와 지정에 따라 관내 하천 불광천, 홍제천, 향동천을 포함하였음.

### 다.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을 피해 흡연하고 있는 실태를 통해 ‘흡연 갈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하천주변의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
- 이는 금연구역 지정 대상인 공공장소 등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흡연구역을 설치 근거를 위한 제도적 마련을 통해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행위로 인정됨.

1) 제2조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 이를 증명하듯 건강증진과에서는 지난 11월11일 서울시 평가사업인 ‘2020년 금연도시 서울만들기사업’에서 청소년흡연예방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음.
- 다만, 하천의 정의 및 범위는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였으나, 하천 일대의 보행자길은 ‘하천 제방의 하천수가 흐르는 공간 {제외지(堤外地)}’과 ‘제방의 보호를 받는 바깥쪽 토지{제내지(堤內地)}’를 구분하거나 포함하는지의 여부가 모호하여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표현할 ‘하천수가 흐르는 공간의 보행자길로 한정하여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아울러, 2016년 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역구역’ 지정·단속은 법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서울시 조례를 인용하여 단속하는 등의 모순이 검토되어 이번 기회에 서울시 조례<sup>2)</sup>가 아닌 법률의 위임 받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률의 정합성을 마련하기 위해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추가적 조항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해 보임.

2)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표] 본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b>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b> 구 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 5.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6. (생 략)</p>	<p>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일대의 보행자길</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b>6.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수가 흐르는 공간의 보행자길</b></p> <p><b>7.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b></p> <p>8. (현행 제6호와 같음)</p>

- 참고로,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은 관내 81개소 지정 운영중에 있으며 단속 실적은 2019년 37건(전체330건), 2020년 10월 기준 23건(전체 270건)임

# [참 고 자 료]

[표] 마포구 관내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현황(총 81개소)

역명	입구개소수	출입구 번호	주소
합정	4	1,2,3,4	마포구 양화로 지하55
합정	6	5,6,7,8,9,10	마포구 양화로 지하45
홍대입구	4	1,2,8,9	마포구 양화로 지하160
홍대입구	4	3,4,5,7	마포구 양화로 지하188
홍대입구	1	6	마포구 양화로 지하188
신촌	4	5,6,7,8	마포구 신촌로 지하90
이대	2	5,6	마포구 신촌로 지하180
아현	2	3,4	마포구 신촌로 지하270
마포	4	1,2,3,4	마포구 마포대로 지하33
공덕	6	1,2,3,4,5,8	마포구 마포대로 지하100
공덕	2	6,7	마포구 백범로 지하200
공덕	2	9,10	마포구 마포대로 지하92
애오개	4	1,2,3,4	마포구 마포대로 지하210
월드컵경기장	3	1,2,3	마포구 월드컵로 지하240
마포구청	8	1,2,3,4,5,6,7,8	마포구 월드컵로 지하190
망원	2	1,2	마포구 월드컵로 지하77
상수	4	1,2,3,4	마포구 독막로 지하85
광흥창	6	1,2,3,4,5,6	마포구 독막로 지하165
대흥	4	1,2,3,4	마포구 대흥로 지하85
디지털미디어시티	2	2,3	
디지털미디어시티	3	7,8,9	마포구 성암로 196
가좌	2	1,2	
서강대	2	1,2	마포구 서강로 지하118



# [관 계 법 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